

기안문

PITC 승인 2023-03-20 14:06

GIG 승인 2023-03-20 08:20

사무부처장/김종호 승인 2023-03-17 16:56

합의 GIG ▶ GIA 합의, GIB 합의

기안자 : 김승락, 총무팀, 0328702045 (2023-03-17 16:05)

보존년한 : 1년 문서번호 : 사무처-기안-2023-324호

비밀구분 : 일반 관리책임자 : GIG

제목 : [Normal] [계약]2023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공제보험 가입

1. 관련문서 : 2023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공제 보험 재가입에 따른 계약 협조 의뢰(교무처-업연-2023-075호)
2. 2023학년도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공제보험을 아래와 같이 가입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요구소속 : 실습지원팀

나. 청약건명 : 2023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공제보험

다. 계약업체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라. 계약금액 : 9,730,030원

마. 계약기간 : 2023.03.28 00시 ~ 2024.03.27 24시

바. 계약내용

○ 가입인원 : 7,037명(재학생)

○ 보상기준 및 내용

구분		내용
보상기준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실습실(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발생시 보상 ※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보상(무과실 책임법리)
보상 내용	유족급여	▪ 1인당 2억원 보상
	장해급여	▪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후유장해 등급별 정액 보상
	요양급여	▪ 20억원 보상
	장 의 비	▪ 1천만원 보상
	입원급여	▪ 1일당 5만원 보상, 3일초과 30일 한도내
	화상치료	▪ 간접지원금 1천만원 보상(신규추가)
	회원서비스	(추가보상)수업료 손실지원금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 치료 후 간병비용 지원(최대 30일 한도)

사. 계약방식 : 비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아. 계약번호 : 제2023-13호

자. 예산항목 : (교비)43251 학생지원비

- 붙임 1. 청약서 1부
2. 견적서 2부. 끝.

보류 / 설명요



첨부파일

1. 청약서 1부.pdf
2. 견적서 2부.pdf

관련문서

2023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공제 보험 재가입에 따른 계약 협조 의뢰

연구실 안전공제 청약서

공제계약자(연구주체의 장) 일반사항

계약자	계약자명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학교 (기관)	학교(기관)명	인하공업전문대학
	연락처					설립구분	사립
	전화	032-870-2039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팩스	032-870-2481					

공제가입 일반사항

일반	공제가입기간	2023-03-28 00시 ~ 2024-03-27 24시 (366 일)			
	공제가입금액	유족급여 : 200 백만원 장해급여 : 200 백만원 요양급여 : 2000 백만원 장의비 : 10 백만원 입원급여 : 5 만원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 10 백만원(단, 대학(원)생에 한함)			
		가입인원 수	7,037 명	총 공제료	9,730,030 원

※공제계약자(연구주체의 장) 인왕

소속신분	급수	인원	공제료	비고
대학생	1 급	2,989 명	2,008,608 원	
대학생	2 급	3,729 명	5,910,465 원	
대학생	3 급	319 명	1,810,963 원	

청약사항 확인(직인)

- ◆ 「연구실 안전공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약관과 청약서를 받았으며,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본 청약서의 연구활동종사자 가입인원은 현재 가입기준일 학과별 재학생 전체 인원수와 일치함을 파악하며, 위와 같이 공제가입 신청(청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직인



배 서 사 항

1. 연구활동종사자 가입인원 변동에 따른 인원·명단 통보 및 자동담보에 관한 사항

1-1. 대학(원)생의 경우 정기적(매학기)으로 가입인원을 안전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보조)원의 경우 인원 변동 시 명단을 안전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2. 통보지체로 학적(명단)에 없는 연구활동종사자 사고자 발생 시

1-2-1. 대학(원)생은 학과별 전체인원을 가입한 학과에 한하여 추가 학적등록생의 경우 본 공제에 자동담보되며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학적에서 제외된 경우 담보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단 학과별 부분인원(명단)으로 가입 시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 담보함.

1-2-2. 연구(보조)원 중 신규채용 된 인원의 경우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담보하며 기존 인원과 변경되어 채용된 경우 총장·기관장 공문으로 증명 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1-3. 대학원 진학예정자(일시적 학적상실자)에 대한 보장기간 확대

1-3-1. 졸업 후 학적에서 제외된 연구활동종사자가 동일학교 진학 예정자로서 연구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안전원은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보장합니다.

1-3-2. 다만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안전원은 더이상 보장하지 않습니다.

1-3-3. 해당 대학원 진학예정자(일시적 학적상실자)에 대한 공제료 환급 또는 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안전원은 더이상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연구활동종사자 가입인원 변동에 따른 공제료 정산에 관한 사항

2-1. 대학생·대학원생·연구원·연구보조원 각각 인원의 10% 이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공제료를 정산하지 아니하며 10%를 초과 한 경우 증감된 전체인원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2-2. 정산일은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하며 정산일 기준 공제가입 대상자 현황을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제료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 시작일 이전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이 지연될 경우 안전원은 공제료 입금 시간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 공제에 가입할때

- (1) 청약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청약서에는 기관의 직인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2)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 (3)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공제에 가입하신후

- (1) 공제증권을 받으시면 청약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청약서 기재사항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다른 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본원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3)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본원에 알려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